

# 양전과 토지조사사업의 陳田과 ‘主’ 파악\*

김 건 태\*

- 
- |                 |                     |
|-----------------|---------------------|
| 1. 머리말          | 2) 19세기 읍양전         |
| 2. 진전파악의 지역적 양상 | 4. 광무양안과 토지대장 비교    |
| 1) 기해·경자양전      | 1) 광무양안의 진기파악       |
| 2) 19세기 읍양전     | 2)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主’명 |
| 3. ‘主’ 파악       | 5. 맺음말              |
| 1) 기해·경자양전      |                     |
- 

초록: 이 글에서는 양안과 토지대장에 등재된 陳田과 ‘主’명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양안과 토지대장의 성격을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조선시대 양안과 광무양안에 등재된 진전과 ‘主’명의 성격은 큰 차이가 없었다. 양안에 등재된 진전 가운데는 그 외관이 여느 산림천택과 다른없는 곳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진전은 양안에 등재되고, 산림천택은 양안에 등재 되지 않았다. 이같이 진전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실제로 산림천택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곳을 논밭으로 인식했다. 양안의 ‘主’명으로 실명뿐만 아니라 戶名, 字, 타인의 이름 등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양한 형태의 이름으로 ‘主’명을 기재하더라도 각종 권리행사에 큰 지장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일제시기 이전까지는 양안에 ‘主’명을 등재할 때 소유자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현실 생활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시기였던 것이다. 한편 ‘陳’에 대한 일제의 인식은 그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외형을 가지고 田, 畓, 河川, 溝, 林野 등으로 판단했다. 일제는 오직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현실만 인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토지대장에 所有者名을 등재할 때 오직 생존자의 실명만 사용하도록 했다.

핵심어: 양안, 토지대장, 陳田, ‘主’名, 戶名, 實名

---

\* 이 논문은 2010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의 학술논문 게재지원을 받았다.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조교수

## 1. 머리말

조선시대 사회·경제사 자료 가운데 양안만큼 연구자들의 주목을 많이 받은 자료도 흔하지 않다. 양안은 조선후기 사회의 성격, 나아가 근대로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밝혀줄 수 있는 자료로 일찍부터 주목받아왔다. 그 결과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 초기 연구는 양안의 성격이 일제시기 토지대장과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었다. 즉 조선시대 양안에 ‘主’로 등재된 사람은 농가세대를 대표하였고, 그 이름은 실명인 것으로 간주하였다.<sup>1)</sup>

그 같은 전제는 1980년대 이르러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양안과 족보, 고문서 등을 활용한 연구는 농가세대의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경자양안에 ‘主’로 등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나아가 조선시대 양안에는 소유자를 分錄, 代錄하는 현상이 적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광무양안의 時主名과 起主名도 실명이 기재된 경우가 많지 않음이 밝혀졌다. 이들 연구는 자료 검토에서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경자양안을 비롯한 조선후기 양안과 광무양안은 근대적 토지대장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자료라고 주장하였다.<sup>2)</sup>

이러한 주장은 광무양안의 성격 논쟁을 촉발 시켰다. 즉 광무양안의 ‘소유권대장적’ 성격을 밝히려는 연구가 다수 제출되었다. 이들은 광무양안이 비록 토지대장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장부는 아니지만 그 이전시기의 양안에 비해 한 단계 발전한 장부였다고 주장하였다. 광무양전을 통해 농지를 철저히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광무양안에 근거해 官契를 발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광무양안에 ‘소유권대장적’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3)</sup>

이렇듯 양안의 성격을 밝히려는 연구가 다수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안의 자료적 성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렇게 미해명의 과제가 남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연구방법론을 지적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양안과 토지대장을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다. 즉 양안과 토지대장을 함께

1) 金容燮, 1970 『朝鮮後期農業史研究』, 一潮閣.

2) 李榮薰, 1989 『朝鮮後期社會經濟史』, 한길사; 金鴻植 외, 1990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3)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1995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2010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 해안.

다루는 연구를 진행할 때 양안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글에서는 기해·경자양안, 19세기 읍양안, 광무양안, 토지대장을 서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검토하는 양안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제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陳田과 ‘主’名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2. 진전과약의 지역적 양상

### 1) 기해·경자양전

여기서는 경상도 용궁, 전라도 능주, 전라도 영광의 기해·경자양전에 등재된 진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세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형태의 양안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용궁현은 1720년에 작성된 『龍宮縣庚子改量田案』<sup>4)</sup>(이하 용궁양안)을 전하고 있다. 용궁양안은 여느 경상도 양안과 마찬가지로 1720년 당시 전답의 陳起 상황에 더하여 1634년 갑술양전 당시의 진기 상황도 일부 전한다. 즉 이른바 起主欄의 ‘舊’는 갑술양전 때의 상황을, 그리고 ‘今’은 경자양전 당시의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용궁양안을 활용하면 1634년과 1720년의 전답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능주목은 1719년에 작성된 기해양안과 1748년에 진전을 대상으로 작성한 양안을 남기고 있다. 능주목에 약 30년의 시차를 두고 작성된 양안이 남게 된 이유는 기해양전 당시 진전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였던 사실과 관련이 있다. 기해양전이 부실하여 이후 여러 폐단이 발생하게 되자, 정부는 1745년부터 전라도 지역의 진전에 대한 改量을 실시하였다.<sup>5)</sup> 1745년부터 실시된 전라도지역 진전 改量의 일환으로 1748년 능주지역에서 진전을 대상으로 별도의 양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안으로 작성하였던 것이다. 이같이 『全羅左道綾州牧西二面己亥量田導行帳』<sup>6)</sup>

4) 『龍宮縣庚子改量田案』(圭14953, 圭14955) 경자양전 당시 용궁현은 10개 면(邑內·申上·申下·南上·南下·北上·北下·內上·內下·西面)으로 구성되어있었는데, 현재 南上·北上·內下면을 제외한 7개면의 양안이 전한다.

5) 영조대 전라도 지역 陳田 개량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宮嶋博史, 1991 『朝鮮土地調査事業事の研究』, 東京大學校 東洋文化研究所.

(이하 능주 기해양안)과 1748년에 작성된 『全羅左道綾州牧陳田戊辰改量正案-西二面』<sup>7)</sup>(이하 능주 무진양안)은 약 30여 년간의 변화상을 전한다.

영광군도 1719년과 1868년의 전답상황을 함께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를 남기고 있다. 그것은 1868년에 작성된 『同治柒年〇〇〇全羅道靈光郡西部面改量案』<sup>8)</sup>(이하 영광 개량안)인데, 동 양안은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영광 개량안은 하나의 면을 상하단으로 나누어 상단에는 기해양안을 등사해서 실고, 하단에는 1868년 양전 결과를 적고 있다.<sup>9)</sup>

1720년 무렵 이들 세 고을에는 공히 논보다 밭이 많았다. 하지만 구체적 실상은 고을에 따라 약간씩 달랐다(〈표 1〉 참조). 밭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용궁이고, 가장 낮은 곳이 능주이다. 소맥산맥 남사면에 위치한 용궁에 밭이 많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되나, 해안가에 위치한 영광의 실상은 예상 밖이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영광에는 보, 제언과 같은 수리시설이 널리 보급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수리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평지도 밭으로 이용하는 것이 논으로 활용하는 것보

〈표 1〉 1720년 무렵 용궁, 능주, 영광의 전답현황

地域 田畝	龍宮		綾州		靈光	
	筆地 (%)	結-負-東 (%)	筆地 (%)	結-負-東 (%)	筆地 (%)	結負東 (%)
田	34680 (72.3)	1681-60-6 (65.8)	2705 (56.0)	92-90-3 (51.3)	4076 (57.6)	498-24-7 (64.3)
畝	13258 (27.7)	872-66-0 (34.2)	2125 (44.0)	88-35-8 (48.7)	2996 (42.4)	277-12-2 (35.7)
合計	47938 (100)	2554-26-6 (100)	4830 (100)	181-26-1 (100)	7072 (100)	775-36-9 (100)

자료: 용궁양안, 능주 기해양안, 영광 개량안.

6) 『全羅左道綾州牧西二面己亥量田導行帳』(奎15040)

7) 『全羅左道綾州牧陳田戊辰改量正案-西二面』(奎15041)

8) 『同治柒年〇〇〇全羅道靈光郡西部面改量案』(奎 25036). 훼손으로 인해 결부수, 기주명 등이 마멸된 8필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9) 영광 개량안의 형식 및 그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鄭勝振, 2003 『韓國近世地域經濟史』, 景仁文化社 참조.

다 더 유리했다. 농업용수를 오직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는 곳에서는, 밭작물을 경작하면 가뭄이 들어도 어느 정도의 곡물을 수확할 수 있지만 벼를 재배하다가 흑심한 가뭄을 만나면 종자마저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용수 압박이라는 측면에서 밭이 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해서, 농민들이 논농사보다 밭농사에 더 적극성을 보였다는 것은 아니다. 경작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농민들은 밭을 먼저 포기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농민들은 밭보다 논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자연 상태에 있던 토지를 논으로 만드는 데까지 드는 비용은 밭으로 일구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훨씬 많았다. 밭은 나무나 풀만 제거하면 씨앗을 뿌릴 수 있었다. 그러나 논은 그렇게만 해서는 범씨를 뿌릴 수 없었다. 높은 곳을 깎아내고 낮은 곳을 메워, 지면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했다. 논은 쉽게 얻을 수 있는 농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나아가 논에서 생산되는 벼는 어떤 밭곡식보다 더 비쌌다. 이런 이유 때문에 농민들은 여간해서 논이 쑥대밭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농민들의 심정은 세 지역의 양안에서 잘 드러난다. 세 지역 모두 밭의 陳田化率이 논에 비해 훨씬 높았다(〈표 2〉 참조).<sup>10)</sup> 영광의 경우 전체 밭의 71.8%가 진전이였다. 1719년 무렵 영광의 밭은 2/3가 쑥대밭으로 변해있었던 것이다. 그에 비해 논에 비해 진전율은 7.7%에 불과했다.

한편 전체 경지에서 차지하는 진전의 비율도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먼적 기준으로 능주는 1.2%에 불과한 데 비해 영광은 무려 48.9%이다. 특히 능주에서는 모든 논이 경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당시의 실상은 능주 기해양안이 전하는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즉 진전으로 방치된 농토가 적지 않게 있었다. 다시 말해 능주의 기해양전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전직후부터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했고, 정부는 농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차원에서 1748년에 진전만 다시 파악하는 양전을 실시했던 것이다. 지역에 따라 진전의 陳田化率이 크게 차이난다는 사실은 기해·경자양전 당시 균전사에 따라 진전에 대한 인식이 상이했음을 의미한다. 즉 용궁과 영광 지역 양전의 최고 책임자, 즉 경상좌도 균전사와 전라우도 균전사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진전을 파악하려고 한 반면 능주 지역 양전을 책임졌던 전라좌도 균전사는 양안에 등재되는 진

10) 용궁양안에 실린 陳田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김건태, 2000 『경자양전 시기 가경전과 진전 파악 실태』, 『역사와 현실』 36 참조.

〈표 2〉 1720년 무렵 용궁, 능주, 영광의 진전 현황

地域 田畝	龍宮		綾州		靈光	
	筆地 (%)	結-負-東 (%)	筆地 (%)	結-負-東 (%)	筆地 (%)	結-負-東 (%)
田	7539 (21.7)	392-40-9 (23.3)	50 (2.4)	2-26-3 (2.4)	1616 (39.6)	357-87-5 (71.8)
畝	836 (6.3)	22-22-9 (2.5)			146 (4.9)	21-47-1 (7.7)
合計	8375 (17.5)	414-63-8 (16.2)	50 (1.8)	2-26-3 (1.2)	1762 (24.9)	379-34-6 (48.9)

자료: 용궁양안, 능주 기해양안, 영광 개량안.

비고: %는 전체 대비 백분율임. 예컨대 용궁의 필지기준 밭 진전화율 21.7%는 용궁의 전체 밭 34680필지에서 7539필지가 진전임을 의미한다.

전규모를 축소하려고 애썼다고 볼 수 있다.

용궁양안은 경상좌도 군전사가 진전 파악에 얼마나 적극성을 보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용궁양안에 진전으로 파악된 전답의 前歷은 다양했다. 진전 가운데는 잠깐 동안 논밭으로 경작되다가 곧 쑥대밭으로 방치된 곳도 있었다. 용궁양안은 갑술양전 당시 山林川澤이던 곳이 그 후 어느 때 개간되어 잠시 경작되다가 진전으로 된 곳도 243필지를 신고 있다. 용궁지역에는 갑술양전 이래 계속 진전으로 방치된 곳도 많았다. 용궁양안에는 갑술양전 때 이미 진전이었던 곳이 무려 1125필지(전체 진전의 13.4%)나 실려 있는데, 이들 토지의 대부분은 진전화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다고 할 수 있다. 진전화의 역사가 100여 년이 넘는 곳은 경자양전 당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즉 농촌현장에서 양전을 직접 담당했던 실무자들은 그곳이 과거 어느 때 논밭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 양전 실무자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인간의 손길이 한 번도 닿은 적이 없는 산림이나 진배없었을 것이다. 그같은 곳을 진전으로 파악한 사실을 통해 논밭에 대한 조선시대 사람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논밭과 산림의 경계는 분명했다. 개간의 손길이 닿은 적이 있으면 논밭이고, 닿은 적이 없으면 산림이었던 것이다.

용궁양안은 농지와 非農地를 구분하는 기준이 양전 당시의 외형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접촉 여부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한다. 용궁양안에는 경자양전

〈표 3〉 용궁양안에 나타난 전답 진전화의 원인

原因	筆地(%)	結-負-束(%)
水害	1871(22.3)	90-05-2(21.7)
墓	39(0.5)	3-04-4(0.7)
淵池	2(0.0)	11-1(0.0)
亭子	1(0.0)	4(0.0)
藪	1(0.0)	2-8(0.0)
原因 不明	6461(77.1)	321-39-9(77.5)
合計	8375(100)	414-63-8(100)

자료: 용궁양안.

당시 물밑에 있던 곳, 즉 강바닥을 진전으로 등재하기도 했다(〈표 3〉 참조). 수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된 1871필지 가운데는 강바닥으로 변한 곳이 많았다. 成川, 水破, 浦落, 堀波 등이 그런 곳인데, 수해를 입어 진전으로 된 곳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sup>11)</sup>

진전의 일부만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능주 기해양안도 산림천택이나 다름없는 진전을 신고 있다. 진전 50필지 가운데 22필지가 舊陳, 즉 갑술양전 이래 진전으로 방치된 곳이었다. 이 진전들은 능주 무진(1748년)양안에도 고스란히 올랐다. 능주 무진양전은 기해양안에 등재된 토지를 대상으로 30여 년간의 변화상을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능주 무진양안에 등재된 전답은 모두 기해양안에 등재된 토지이고, 새로 파악된 토지가 없다. 그리고 동 양안은 기경전에서 진전으로 변한 곳만 파악한 것이 아니라 진전에서 기경전으로 바뀐 곳도 신고 있다.

능주에서는 기해양전 이후 30여 년 동안 많은 진전이 새로 생겼다. 능주 무진양안에는 544필지가 등재되어 있는데, 이들 전답은 기해양안의 진전 50필지와 기해양전 이후 기경전에서 진전으로 변한 494필지로 구성된다. 약 30년 사이에 기해양

11) 용궁양안에 기재된 수해 양상과 피해를 입은 전답 규모는 다음과 같다. 覆沙, 642필지(전체 진전의 7.7% 이하 동일한 의미임) 30-73-3속(전체 진전의 7.4% 이하 동일한 의미임), 成川 520필지(6.2%) 39-72-4속(9.6%), 川反 347필지(4.1%) 12-91-6속(3.1%), 水破 317필지(3.8%) 5-41-8속(1.3%), 浦落 40필지(0.5%) 1-04-7속(0.3%), 堀波 4필지(0.0%) 20-0속(0.0%), 川坊 1필지(0.0) 1-4속(0.0)

안에 기재된 전답 4830필지의 10% 이상에서 진전화가 진행된 셈이다. 용궁, 영광과 마찬가지로 능주에서도 진전화는 주로 밭에서 진행되었다. 능주 무진양안의 지목구성은, 기해양안 기준으로 볼 때 전 494필지(90.8%), 답 50필지(9.2%)이다. 기경전에서 진전으로 변한 농지 가운데 일부는 물밑에 존재하는 곳도 있었다. 즉 진전 가운데 시내로 변환[成川] 곳이 22필지나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진전에 대한 능주 무진양전 담당자들의 인식이 용궁 경자양전 담당자들과 동일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개간의 손길이 닿은 적이 있는 곳은 양전 당시에는 천택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농토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 2) 19세기 읍양전

여기서는 앞서 소개한 영광 개량안에 더하여 1871년에 작성된 경상도 『彦陽縣南三洞量案』<sup>12)</sup>(이하 삼동면 양안)과 『彦陽縣中南面量案』<sup>13)</sup>(이하 중남면 양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언양현에는 1861년 작성된 호적이 현존하고 있어, 양안의 자료적 가치가 배가된다.

1870년 무렵 두 고을에는 논이 밭보다 더 많았다(〈표 4〉 참조). 영광에서는 1719년 이후 약 150년 동안 밭을 논으로 바꾸는 번답화를 꾸준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719년 당시 영광은 논보다 밭이 더 많았다. 일부의 밭은 1719년 이후 논으로 바뀌었지만 많은 밭은 1870년 무렵에도 여전히 농민들의 손길이 끊어진 채 진전으로 방치되고 있었다(〈표 5〉 참조). 하지만 1719년에 비해서는 진전이 훨씬 줄어든 상태였다. 앞서 보았듯이 영광의 진전은 1719년 379결34부6속이 이었으나, 1870년 무렵에는 265결77부1속으로 줄어들었다. 영광의 진전은 앞시기에 비해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868년 당시 그 곳의 밭은 절반 이상이 여전히 쑥대밭이었다. 버려진 밭은 언양에도 많았다. 언양에서도 밭의 40%에는 풀만 무성했다.

한편 논이 진전화율은 밭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특히 1870년 무렵 언양에서는

12) 『慶尙道彦陽縣南三洞田畝量案』(奎15008, 15013)

13) 『雙水亭洞田畝結大帳』(奎 15010), 『中南面方基洞田畝結打量正案』(奎 15015), 『平里洞德員禮員田畝打量冊』(奎 15017), 『加川洞田畝改量野草』(奎 15019), 『華山洞田畝結正案』(奎 15018), 『洞名不明』(奎 15009), 『洞名不明(奎 15014)』. 洞名不明 양안 2종은 앞부분이 낙질된 상태로 전한다.

〈표 4〉 1870년 무렵 영광과 언양의 전답분포 현황

地域 田畝	靈光		彦陽	
	筆地(%)	結-負-束(%)	筆地(%)	結負束(%)
田	2959(48.5)	265-77-1(46.0)	5905(53.2)	317-52-0(39.4)
畝	3138(51.5)	312-26-2(54.0)	5188(46.8)	487-71-5(60.6)
合計	6097(100)	578-03-3(100)	11093(100)	805-23-5(100)

자료: 영광 개량안, 언양양안.

〈표 5〉 1870년 무렵 영광과 언양의 진전 현황

地域 田畝	靈光		彦陽	
	筆地(%)	結-負-束(%)	筆地(%)	結-負-束(%)
田	862(29.1)	167-32-7(63.0)	297(5.0)	141-85-9(44.7)
畝	209(6.7)	47-72-9(15.3)	29(0.6)	4-30-9(0.9)
合計	1071(17.6)	215-05-6(37.2)	326(2.9)	146-16-8(18.2)

자료: 영광 개량안, 언양양안.

비고: %는 전체 대비 백분율임. 예컨대 영광의 필지기준 밭 진전화율 29.2%는 영광의 전체 밭 2948필지에서 862필지가 진전임을 의미한다.

논의 진전화가 거의 멈춰선 상태였다. 그런데 언양의 실상을 유심히 살펴보면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밭의 진전 비율이 필지 기준으로는 5%에 불과하나 면적기준으로는 무려 50%에 육박한다. 이러한 사실은 넓은 지역이 모두 진전으로 변한 곳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加川洞 大夜員 入字 360번 필지 같은 곳이다.<sup>14)</sup> 이 필지는 6등 直田 11결99부4속으로, 면적이 무려 479750평방척(약 14만 5천여 평)에 달한다. 산림이나 다름없다. 언양양안에는 이외에도 넓은 지역에서 진전화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보인다. 1필지가 1결이 넘는 진전은 모두 40필지이며, 그 면적은 110결71부7속으로 전체 진전의 75.7%를 차지한다. 이렇게 넓은 지역이 모두 진전으로 바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인다. 즉 그곳 모두가 한 때는 밭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1871년 당시 거의 없었을 것이다. 구래의 양안이 없었더라면 이곳의 역사는 땅에 파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14) 『加川洞田畝改量野草』(奎 15019).

산림천택이나 다른없는 진전이 양안에 등재되는 관행은 영광 개량안에서도 확인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영광 개량안은 한 면을 상하단으로 나눈 다음 위에는 기해양안을 등사해서 신고 아래에는 1868년 양전의 결과를 정리했다. 상단에는 7078필지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6097필지가 기재되어 있다.<sup>15)</sup> 이같이 기해양전의 결과와 1868년 양전의 결과를 같은 면에 기재해 둔 덕분에 해당 기간내의 변화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표 6〉 참조). 영광 개량안은 陳起의 변화가 오직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양방향으로 진행됨을 보여준다. 어떤 필지는 진전에서 기경전으로 변하고, 또 어떤 필지는 진전에서 기경전으로 변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진전의 기경전화가 더 많이 진행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경전이 서서히 증가했던 것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전이 비록 조금씩 감소했지만, 여전히 개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진전은 많았다. 1868년 양전 당시의 진전 가운데 기해양전 이래 줄곧 진전으로 남아 있던 곳도 무려 100결이 넘었다. 당시 이곳의 외관은 여느 산림천

〈표 6〉 1719-1868년 사이 영광군 서부면의 陳起 변화양상

1868年 1719年	起	陳	合計
	結-負-東(%)	結-負-東(%)	結-負-東(%)
起	269-76-4(82.9)	55-63-5(17.1)	325-39-9(100)
今陳	11-15-9(16.4)	56-93-2(83.6)	68-09-1(100)
舊陳	13-14-8(11.6)	100-67-2(43.4)	113-82-0(100)
合計	294-07-1(58.0)	213-23-9(42.0)	507-31-0(100)

자료: 영광 개량안.

비고: 1719년과 1868년이 연결되는 필지에 한함.

15) 기해양안의 필지와 1868년 양안의 필지가 모두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필지는 기해양안의 내용은 있으나, 1868년 양안의 내용이 없고, 어떤 필지에서는 그 반대현상이 확인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원인으로 합필과 분필이 발생한 사실을 들 수 있다. 합필 현상으로 인해 1868년 양전에서 필지수가 그 이전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그런데 합필이 일정한 규칙에 의해 진행되었다면, 예컨대 지번이 바로 이웃하고 있는 필지끼리만 합필이 되었다면 1868년의 양안 상단에는 모두 기해양안의 내용이 있게 된다. 그러나 합필은 그렇게 단순하게 진행되지만은 않는다. 예컨대 지번이 크게 차이 나는 필지끼리 합필되기도 하고, 자호를 달리하는 필지끼리 합필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혹은 2필지가 합필되었다가 3필지로 분필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택과 다름없었을 것이다. 이같이 논밭으로 경작되다가 다시 산림천택으로 변한 곳의 외형은 太古 때부터 1868년 양전 때까지 인간의 손길이 닿은 적이 없는 곳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진전은 양안에 등재되고, 산림천택은 양안에 등재 되지 않았다. 이같이 진전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실제로 산림천택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곳을 논밭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 3. ‘主’ 파악

#### 1) 기해·경자양전

경작의 손길이 닿았다가 다시 산림천택으로 변한 곳과 太古 때부터 계속 산림천택으로 남아 있던 곳을 구분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손길이 닿은 적이 있는 땅이라면 비록 아름답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곳이라도, 심지어 열길 깊이의 물속 강바닥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고, 나아가 그 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작의 손길이 닿은 적이 없는 땅은 집 뒷산이라도 정부에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주거나 혹은 그 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지 않았다.<sup>16)</sup>

그와 달리 진전에는 개인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진전의 임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1720년 무렵 용궁, 능주, 영광의 진전 소유자 현황은 지역에 따라 너무나 상이했다(〈표 7〉 참조). 영광의 진전은 70% 이상이 임자 없는 땅이었으나 용궁의 진전은 80% 이상이 주인 있는 땅이었다. 이처럼 용궁에서는 陳田의 소유자를 분명히 하려고 했다. 대부분의 진전에 임자가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용궁지역 진전 가운데는 경작되는 곳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sup>17)</sup> 그리고 경자양전 이후 未久에 다시 熟田으로 변한 곳도 많았을

16) 조선후기 정부는 산 그 자체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준 적은 없고, 다만 나무에 대한 개인의 배타적 권리만을 인정했다. 김선경, 1993 『조선후기 山訟과 山林 所有權의 실태』, 『東方學志』 77-79; 김경숙, 2002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李宇衍, 2005 『朝鮮時代-植民地期 山林所有制度和 林相變化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표 7〉 1720년 무렵 용궁, 능주, 영광의 진전 소유자 현황

地域 現況	龍宮		綾州		靈光	
	筆地(%)	結-負-束(%)	筆地(%)	結-負-束(%)	筆地(%)	結-負-束(%)
有主	7324 (87.0)	334-88-3 (81.0)	2 (4.0)	6-5 (2.9)	773 (43.9)	98-24-5 (25.9)
無主	1051 (13.0)	79-75-5 (19.0)	48 (96.0)	2-19-8 (97.1)	989 (56.1)	281-10-1 (74.1)
合計	8375 (100)	414-63-8 (100)	50 (100)	2-26-3 (100)	1762 (100)	379-34-6 (100)

자료: 용궁양안, 능주 기해양안, 영광 개량안.

〈표 8〉 용궁양안과 능주 기해·무진양안의 소유자 기재형식

地域 類型	姓名	姓名 + 奴婢名字	名字	合計
	筆地(%)	筆地(%)	筆地(%)	筆地(%)
龍宮	24039(53.6)	11196(25.0)	9586(21.4)	44821(100)
綾州 己亥	4200(88.6)	529(11.2)	9(0.2)	4738(100)
綾州 戊辰	150(22.7)		510(77.3)	660(100)

자료: 용궁양안, 능주 기해·무진양안.

것이다.

이같이 정부는 임자가 분명한 진전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름을 양안에 등록하는 것을 허락했다. 용궁현 진전의 소유자들이 양안에 올린 이름은 대체로 3종류였다.<sup>18)</sup> 첫째, 金有興처럼 성명을 모두 기재하는 경우다. 둘째 朴文道奴永萬처럼 성명 뒤에 노비 이름을 부기하는 경우다. 셋째 玉奉처럼 이름만 올리는 경우이다. 능주 기해양안에는 진전이 너무 적어, 그것만으로는 양안에서 이름 기재형식이 갖는 일반성을 유추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양안에 이름이 등재된 모든 필지의 이름 기재형식을 살펴기로 한다. 다른 지역 또한 능주와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양안에 이름이 등재된 모든 필지를 분석

17) 김건태, 2000 『경자양전 시기 가경전과 진전 파악 실태』, 『역사와 현실』 36.

18) 용궁양안의 기관 소유지(둔전, 마위전 등) 사찰 소유지, 무주지, 여성 소유지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능주 기해양안의 무주지, 사찰소유, 관둔 등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했다.

용궁양안과 능주 기해양안은 성과 명을 모두 기재하는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표 8〉 참조). 경자양안 기주란에 적힌 이름 가운데는 실명도 많았다. 대구 조암방 경자양안에 등재된 소유자 이름의 약 65%는 1710~30년대 조암방 및 그 주변지역 호적에서 확인된다.<sup>19)</sup>

양안에 이름을 올릴 때 실명의 성명을 모두 기재하는 모습은 그 이전 양안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었다.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소유주들이 양안에 이름을 올릴 때 일반적으로 성을 생략하고 이름만 기재했다. 이러한 관행이 경자양안 단계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즉 경자양안에 등재된 ‘主’명이 모두 실명인 것은 아니었다. 경자양안에 등재된 ‘主’명 가운데는 戶名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당시 양반들은 양안뿐만 아니라 각종 부세대장에 이름을 올릴 때 자신들의 노비 이름으로 代錄하기도 했다.<sup>20)</sup> 上典을 대신하여 양안이나 각종 부세대장에 등재된 노비명을 戶名이라 하는데, 양반들이 사용하던 호명 가운데는 오래 전에 이미 사망한 노비 이름도 많았다.

이같이 경자양안 기주란에는 호명이 등재되기도 했지만, 경자양전 담당자들은 땅 임자의 이름을 실명 중심으로 파악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그러한 노력이 경자양전 이후에는 계속되지 못한 곳도 있었다. 능주에서는 무진양안을 작성할 때 기해양안 이전의 관행으로 되돌아갔다. 능주 무진양안의 경우 성명을 기재한 필지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 77%의 필지에는 다만 노·비+이름 형태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다. 18세기 중·후반 전라도 지역에서는 양안에 이름을 올릴 때 기해양안 이전의 관습으로 되돌아갔다고 여겨진다.

능주 기해양안과 무진양안의 ‘主’명은 단순히 외형만 바뀐 것이 아니고 내용도 대부분 변했다. 무진양안의 기주명과 기해양안의 기주명이 일치하는 경우, 즉 성명이 동일하거나, 명자가 동일한 사례는 겨우 20% 남짓이다(〈표 9〉 참조). 〈표 9〉의 ‘己亥量案과 比較’에서, ‘姓名同’은 무진양안과 기해양안에서 성명이 동일한 필지이다. 예컨대, 稱 76번은 기해양안의 ‘主’명이 金天寶이고, 무진양안의 ‘主’명이 金千寶이다. ‘名字同’은 무진양안의 노비명자와 기해양안의 명자가 동일한 경우이다. 珠 156번은 기해양안의 ‘主’명이 金仁宗이고, 무진양안의 ‘主’명이 奴仁宗

19) 金容燮, 1993 『朝鮮後期 身分構成의 變動과 農地所有』, 『東方學志』 82.

20) 이영훈, 1997 『量案 上의 主 規定과 主名 記載方式의 推移』,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민음사.

〈표 9〉 능주 기해·무진양안의 ‘主’名 기재형식 비교(단위: 필지)

戊辰量案의 型式 己亥量案과 比較	姓名	奴婢名字	名字	合計
姓名同	46(31.9)			46(7.3)
名字同		82(16.9)		82(13)
不同	98(68.1)	402(83.1)	3(100)	503(79.7)
合計	144(100)	484(100)	3(100)	631(100)

자료: 능주 기해·무진양안.

비고: (괄호) 안의 수치는 %임.

이다. ‘不同’은 무진양안과 기해양안의 명자가 상이한 필지이다. 예컨대, 劔 36번은 기해양안의 ‘主’名이 姜太山, 무진개량의 ‘主’名이 奴太月이다.

여기서 호명관행의 확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호명은 자신의 실명과 상이한 또 다른 이름으로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대체로 유학과 같은 상층직역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용이 관행화되어 있었다.<sup>21)</sup> 능주 양안에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柸자 245번 필지의 기주는, 기해양안에 尹尙成婢無心, 무진양안에 婢無心으로 기재되어있다. 柸자 270필지의 기주는 기해양안에서 朴思孝婢士价, 무진양안에 婢士价이다. 이러한 예는 이외에 더 많다. 이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능주 무진양안의 노비명자는 대부분 실명이 아니고, 假名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기해양전 당시에도 일반 상민 가운데서 상층의 호명사용 관행을 흉내 내는 사람이 있었다. 앞서 살펴본 金仁宗의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를 하나 더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稱자 341, 342, 344번 필지의 기주는, 기해양안에서 金千白, 무진양안에서 奴千白이다. 仁宗은 상민 金○○, 千白은 상민 金□□의 호명이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기해양전 당시 상민이었던 金仁宗과 金千白이 무진양전 때에 이르러 타인의 奴로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 2) 19세기 읍양전

1870년 무렵, 영광에는 외형상 산림천택이나 진배없는 진전이 곳곳에 널려 있었고, 언양에는 넓은 면적의 진전이 산재했다. 두 지역 양안은 진전의 소유주와

21) 김건태, 2009 「戶名을 통해 본 19세기 職役과 率下奴婢」, 『韓國史研究』 144.

〈표 10〉 1870년 무렵 영광, 언양의 진전 소유자 현황

類型	地域	靈光		彦陽	
		筆地(%)	結-負-束(%)	筆地(%)	結-負-束(%)
有主		257(24.0)	34-50-8(16.0)	60(18.4)	2-99-1(2.0)
無主		814(76.0)	180-54-8(84.0)	266(81.6)	143-17-7(98.0)
合計		1071(100)	215-05-6(100)	326(100)	146-16-8(100)

자료: 영광 개량안, 언양양안.

관련해서 유사점과 차별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 유사성은 이름이 등재된 곳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두 지역의 진전은 대부분 임자 없는 곳이었다(〈표 10〉 참조).

차별성은 두 지역 진전의 ‘主’名 형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두 지역 양안에 등재된 ‘主’名 형식은 진전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다. 따라서 표본수를 늘린다는 차원에서 진전뿐만 아니라 ‘主’名이 기재된 起耕田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영광 개량안에서 땅 임자의 이름이 기재된 곳은 모두 4930필지이다.<sup>22)</sup> 그 중 劉日今처럼 성명을 모두 기재한 곳이 209필지(4.2%), 占德처럼 성을 생략하고 이름만 기재한 경우가 4721필지(95.7%)이다. 영광에서 1868년 양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안으로 엮을 때 대체로 땅 임자의 이름만 기재했음을 알 수 있다. 영광 개량안에 등재된 ‘主’名의 대부분은 땅 임자의 실제 이름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언양양안에서 땅 임자의 이름이 등록된 곳은 9796필지이다.<sup>23)</sup> 9796필지의 ‘主’名은 黃錫範처럼 모두 姓과 名을 갖추었다. 이같이 언양양안에 기재된 ‘主’名의 형식은 모두 동일하지만, 그 성격은 양안에 따라 크게 상이하다. 그러한 사실은 1861년 언양호적과 언양양안을 대조해 보면 드러난다. 언양양안에 등재된 ‘主’名은 모두 성명을 갖추었지만 그 중 일부는 실존 인물이고, 나머지 일부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예컨대, 삼동면 양안의 金敬漢은 삼동면 호적 鵲洞里 6통 2호의 주호 幼學 金慶漢으로 확인된다. 이같이 김경한은 1871년 양안 작성당시의 실존

22) 6078필지 가운데 무주지, 관둔전, 여성 소유지 등과 같이 땅 임자의 이름을 확인하기 어려운 1148필지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23) 11093필지 가운데 둔전(마위전 포함), 공동소유지(각종 계, 동리), 무주진전, 사찰 소유지 등과 같이 땅 임자의 이름을 확인하기 어려운 1297필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11〉 1871년 언양양안에 등재된 ‘主’명의 호적기재 현황

地域 戶內位相	삼동면			중남면		
	人(%)	筆地(%)	結-負-束(%)	人(%)	筆地(%)	結-負-束(%)
主戶 및 그直系	180 (72.3)	1391 (72.1)	79-81-6 (81.8)	57 (30.2)	208 (16.6)	11-97-0 (15.0)
主戶의 傍系家族	43 (17.3)	227 (11.8)	11-96-1 (12.3)	13 (6.9)	64 (5.1)	5-43-1 (6.8)
挾人	3 (1.2)	11 (0.6)	55-1 (0.6)			
奴婢	23 (9.2)	300 (15.6)	5-18-7 (5.3)	119 (63.0)	983 (78.3)	62-25-8 (78.2)
合計	249 (100)	1929 (100)	97-51-5 (100)	189 (100)	1255 (100)	79-65-9 (100)

자료: 언양양안, 1861년 언양호적.

인물이다. 한편 가친동 野草의 辛命三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 신명삼은 중남면 加川里 10통 5호의 주호 辛蓉의 姓과 그 솔하에 기재된 命三의 이름을 결합한 형태이다.<sup>24)</sup> 신명삼은 상전의 성과 노비의 이름을 합친 戶名인 것이다.

언양양안에 등재된 땅 임자의 성격은 면에 따라 크게 차이난다(〈표 11〉 참조). 삼동면 양안에 등재된 ‘主’는 1325명이며, 그 가운데 호적에서 확인되는 사람은 249명이다. 호적에서 확인되는 이름은 대부분 실존 인물의 성명이다. 반면 중남면 양안에 등재된 이름은 호명이 더 많다. 중남면 양안에 등재된 ‘主’는 1064명이며, 그 가운데 호적에서 확인되는 사람은 189명이다. 189명 가운데 호명을 사용한 사람은 119명이다. 무슨 이유 때문에 두 면의 양안에 등재된 이름의 성격이 크게 차이가 날까? 현존하는 1871년 언양양안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1871년 언양양안은 삼동면 양안 2책,<sup>25)</sup> 하북면[慶尙道彦陽縣北三洞田畚結量案] 양안 1책, 중남면 양안 7책 등 모두 10책이 전한다. 면에 따라 책수가 크게 차이나는 까닭은 하북면과 삼동면 양안은 면단위로 제작되었고, 중남면 양안은 洞 단위로 제작되

24) 언양양안에 등재된 이름의 성격이 갖는 이같은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宮嶋博史, 1996 『量案における主の性格』, 『論集朝鮮近現代史: 姜在彦先生古稀記念論文集』, 明石書店.

25) 奎15008, 15013.

〈표 12〉 1871년 언양 중남면 양안에 등재된 이름의 호적기재 현황 (단위: 인)

戶內位相 洞名	主戶 및 그 血緣(%)	奴婢(%)	合計
加川洞(野草)	1(3.7)	26(96.3)	27(100)
雙水亭洞(大帳)		20(100)	20(100)
洞名不明(奎 15009)		26(100)	26(100)
方基洞(正案)	28(93.3)	2(6.7)	30(100)
華山洞(正案)	1(14.3)	6(85.7)	7(100)
平里洞(打量冊)	4(100)		4(100)
洞名不明(奎 15014)	16(94.1)	1(5.9)	17(100)

자료: 언양양안, 1861년 언양호적.

있기 때문이다.

삼동면 양안은 2책이 전하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동일하다. 1권은 호조 보관용이고, 다른 1권은 언양현 보관본 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호조 보관용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양안은 완전한 형태로 전하고 글자체가 아주 정결하다. 그에 비해 언양현 보관용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양안은 앞뒤 부분이 많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글자체 또한 호조 보관용에 비해 그 격이 떨어진다.

한편 중남면 양안의 성격은 책에 따라 다르다. 책에서 內題가 확인되는데, 내제에 따르면 加川洞 양안은 野草, 方基洞과 華山洞 양안은 正案이다. 내제가 확인되는 나머지 양안은 雙水亭洞 大帳과 平里洞 打量冊이다. 이같이 중남면 양안은 정본과 야초가 전한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중남면 양안의 땅 임자 이름 기재형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중남면 양안은 책에 따라 땅 임자의 이름 양식을 달리한다(〈표 12〉 참조). 내제에서 野草라고 밝히고 있는 加川洞 양안에 등재된 땅 임자의 이름은 주로 호명이다. 그리고 내제에서 正案임이 확인되는 方基洞 양안에 기재된 땅 임자의 이름은 대부분 實名이다. 방기동 양안과 삼동면 양안의 ‘主’명 기재형식과 양안의 성격을 미루어 볼 때 1871년 언양현에서 양안을 작성할 때 정안에는 대부분 실명을 기재하려고 했다고 할 수 있다. 1870년 무렵 경상도에서 양안을 작성할 때 땅 임자의 이름으로 실명을 기재한 사례를 더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경주 행심책인데, 현재 4종이 확인된다.<sup>26)</sup> 1871년에 작성된 양안을 등산한 이들 행심책은 裳地를 붙여가면서 몇 년간의 납세자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행심책에 기재된 기

주명과 납세자명이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양안의 기주명은 실명이고, 행심책의 납세자명은 호명임을 의미한다.

加川洞 양안과 경주지역 행심책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땅 임자의 이름으로 호명이 주로 기재된 雙水亭洞 양안과 洞名不明(奎 15009)의 또 다른 양안 하나는 야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땅 임자의 이름으로 실명을 주로 등재한 平里洞 양안과 洞名不明(奎 15014)의 또 다른 양안 하나는 正案이라 할 수 있다. 내제에 정안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華山洞 양안에서도 실명보다 호명이 더 많이 확인된다. 하지만 화산동 양안에 올라 있는 이름 가운데 중남면 호적에서 확인되는 사례가 7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호명과 실명 가운데 어느 것이 중심이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이같이 18·19세기 양안에는 실명에 더하여 호명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主’명을 기재하더라도 각종 권리행사에 큰 지장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18·19세기는 양안에 ‘主’명을 등재할 때 호명을 사용하여도 현실 생활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시기였던 것이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 사실은 산림천택이나 다른없는 진전을 양안에 등재한 사실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즉 18·19세기에는 양안을 작성할 때 오직 현재의 사실만 파악한 것이 아니라 과거 사실도 ‘現在化’시켜 활용했던 것이다. 이같이 18·19세기 양안에는 세월의 켜가 여러 층 쌓여있었다.

## 4. 광무양안과 토지대장 비교

### 1) 광무양안의 진기파악

20세기 이전에 작성된 양안과 광무양안을 비교했을 때 광무양안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陳田이 적다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예컨대 1871년 양안을 등사한 경주 九政里 행심책에 등재된 전답 711필지 56결59부1속(4필지 결부수 미확인) 가운데 진전이 177필지 17결68부9속(3필지 결부수 미확인)인 데 반해 1903년에 작성된 경주 광무양안에는 진전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광무양안에서 구정

26) 3책은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다. 『慶尙北道慶州郡量案』(古大4258.5-17a,b,c), 1책은 『水只谷九政小冊』으로, 현재 영남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표 13〉 수원 일용면과 용인 도촌면 지계아문 양안의 진기현황(단위: 필지)

陳記		地域	水原(%)	龍仁(%)
		有主	全陳 部分陳	29(1.4) 23(1.1)
		無主 起耕	18(0.9) 1946(94.3)	33(2.3) 1266(89.9)
		合計	2063(100)	1408(100)

자료: 수원·용인 지계아문 양안.

리 전답(724필지, 36결89부9속), 나아가 구정리가 속한 丙東面 전체 전답(13389필지 771결90부2속) 가운데 진전은 단 1필지도 없다.

진전 파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계아문양안에 비해 양지아문양안이 더 소극적이었다. 그러한 사실은 수원·용인의 양지아문양안과 지계아문양안을 비교해 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sup>27)</sup>(〈표 13〉 참조). 예컨대, 수원 日用面 양지아문양안<sup>28)</sup>에는 진전이 전혀 없는 데 반해 지계아문양안<sup>29)</sup>에서는 전답의 5% 이상이 진전이다. 그리고 용인 道村面 양지아문양안<sup>30)</sup>에는 진전이 전혀 없고, 지계아문양안<sup>31)</sup>에서는 전답의 10% 이상이 진전이다. 지계아문양안이 양지아문양안에 비해 진전을 더 많이 싣고 있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지계아문은 양지아문양안을 토대로 양안을 새로 작성했는데, 그 때 단순히 양지아문양안에 등재된 전답의 진기여부만을 재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안에서 누락된 진전까지 파악했기 때문이다. 지계아문양안의 有主陳田은 대부분 양지아문양안 때부터 등재된 전답이었고, 무주진전은 상당부분 지계아문양안 단계에서 새로 파악한 곳이다. 지계아문양안은 경작되던 전답이 시내로 변한[成川]곳도 田畚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이같이 광무양안의 진전 인식은 양전 시행주체에 따라 상당히 달랐다. 양지아

27) 양지아문양안과 지계아문양안의 진전파악에 대한 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글이 자세하다. 이영호, 1995 『光武量案의 기능과 성격』,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편.

28) 奎 17650.

29) 奎 17651.

30) 奎 17644.

31) 奎 17645.

〈표 14〉 수원 일용면과 용인 도촌면 양지아문양안과 지계아문양안의 ‘主’ 변화양상  
(단위: 필지)

‘主’ 現況		地域	
		水原(%)	龍仁(%)
存續		1807(87.6)	1206(85.7)
變更	姓同名不同	146(7.1)	65(4.6)
	姓不同A	91(4.4)	106(7.5)
	姓不同B	19(0.9)	31(2.2)
小計		110(5.3)	137(9.7)
合計		2063(100)	1408(100)

자료: 수원·용인 양지아문양안.

문은 예전에 경작된 적이 있는 곳이라도 주인 없이 버려진지가 오래되어 산림천택이나 다름없는 무주진전은 적극적으로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양지아문은 외형상 과거에 전답이었음이 분명한 곳만 진전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지계아문은 양전 당시에는 외양이 산림천택처럼 보이지만 예전에 전답으로 경작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곳까지 적극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전답과 산림천택에 대한 조선후기의 인식이 광무양전 단계까지도 지속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눈앞에 산림천택이 펼쳐져 있더라도, 그곳에 개간의 손길이 닿은 적이 있었다면 그 지역을 농토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한편 지계아문은 양안을 새로 작성하면서 진전조사에 더하여 땅 임자도 재조사하였다. 그 결과 적지 않은 필지에서 땅 임자의 이름이 변경되었다. ‘主’명이 변경된 필지는 수원 일용면과 용인 도촌면에서 모두 10%를 상회했다(〈표 14〉 참조). ‘主’명이 변경된 필지 가운데는 성명이 모두 변경된 필지도 있다. 예컨대, 용인 양지아문양안 云字 51번의 田主는 廉石化다. 이에 대응되는 지계아문양안의 필지는 群字 53번인데, 그곳의 時主는 金萬成이다. 성은 동일하고 이름[名]만 변경된 곳도 있었다. 이런 경우는 내용상 다시 두 형태로 분류된다. 필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이다(〈표 14〉의 姓不同A). 예컨대, 용인 양지아문양안 云字 2번의 田主는 具性文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되는 지계아문 양안의 필지는 群字 2번인데, 그곳의 시주는 具卜先이다. 하나의 필지가 2개 이상으로 분필 될 때 새로운 ‘主’명이 등장하기도 한다(〈표 14〉의 姓不同B). 예컨대, 용인 양지아문양안 云字 5번은 38부2속

이고, 畵主는 金云交다. 이 필지는 지계아문 양안에서 群자 5번, 6번, 7번으로 분필된다. 5번은 7부 시주 金云交, 6번은 11부5속 시주 裴士劍이고, 7번은 6부2속 시주 金云交다.

이같이 지계아문과 양지아문은 진전 파악에 대한 입장을 다소 달리 했지만 ‘主’名을 파악할 때 비슷한 행보를 취했다. 양지아문양안과 지계아문양안에 등재된 ‘主’名은 성명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광무양안에 등재된 ‘주’명은 성명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외형만으로는 그것이 실명인지, 호명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주’명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료의 도움이 필요하다.

## 2)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主’名

주지하듯이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의 첫 단계 작업으로 結數連名簿를 작성하고, 그 다음 단계로 課稅地見取圖를 작성했다. 일제는 이 때 구래의 양안을 참조했는데, 지역에 따라 기해·경자양안을 참고하기도 하고, 19세기 읍양안을 활용하기도 하고, 광무양안을 참고하기도 했다. 그러한 사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진주 지방에서는 경자양안을 활용하여 결수연명부를 작성했다. 진주 金谷面 雲門里에 거주하던 晉州 河氏 자료가 그러한 사실을 전한다.<sup>32)</sup> 晉州 河氏家에서 1916년 작성한 토지신고서에는 河宗鶴의 소유지 14331평(2결9부3속)과 宗中所有 전답 17277평(2결90부1속)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 토지에는 19종의 字號(丙, 舍, 對, 設, 敲, 瑟, 吹, 階, 納, 弁, 轉, 內, 左, 達, 承, 明, 集, 亦, 聚)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들 자호는 이 지역의 경자양안인 『金冬於里大張』에서 확인 된다. 진주지방에서는 결수연명부를 작성할 때 1904년 작성된 광무양안<sup>33)</sup>을 제쳐두고 경자양안을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영광군에서는 1868년에 작성된 개량안을 활용하여 결수연명부를 작성했다. 靈光郡 靈光面 立石里에 거주하는 寧越 辛氏家는 1868년 양안에서 자신의 토지를

32) 韓國學中央研究院 所藏(마이크로필름번호 35-7617-7633). 일부는 『古文書集成—晉州 雲門 晉陽河氏篇』 57,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1에 실려 있다.

33) 진주 하씨가 자료 가운데는 ‘甲辰 改量抄’라고 명명된 전답안이 전한다. 甲辰年(1904) 진주지방에서 지계아문 주도 하에 양전이 실시되었음을 미루어 볼 때 이 자료는 지계양안을 등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뿔아 전답안을 만들었다.<sup>34)</sup> 동 전답안에서 14자호(騰致雨 露結爲霜 金生麓 玉出崑崗)가 확인되는데, 이들 자호는 1911년 영월 신씨가에서 작성한 결수연명부에서 모두 등장한다.

이같이 일제는 1868년 양안을 토대로 영광지역 결수연명부를 작성하였지만 양안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온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의 변화상을 결수연명부에 반영했다. 영월 신씨의 자료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영월 신씨가 소유토지는 1868년 전답안에서 228필지(19결6부9속)였고,<sup>35)</sup> 1911년 結數連名簿[土地申告摘錄]에서 112필지(17결35부8속)이다. 약 50년 동안의 필지수 감소율(51.9%)이 동 기간 동안의 면적 감소율(11.7%)보다 월등히 높다. 결수연명부를 작성할 때 양안상의 여러 필지를 하나로 묶는 합필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씨가 결수연명부에 기재된 112필지와 1868년 전답안에 등재된 필지 가운데 결부수가 서로 동일한 필지는 61필지에 불과하다. 나머지 필지는 결수연명부의 결부수와 양안의 결부수가 서로 상이하다. 결부수가 상이한 필지의 등장은 합필의 결과이다.

장흥군에서는 결수연명부를 작성할 때 광무양안을 참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흥군 용산면 상금리 水原 白氏 文契에서 작성한 用下記<sup>36)</sup>에서 그러한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동 용하기에 등장하는 자호는 19세기 전반부터 1911년까지 동일하고, 1912년부터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 동 용하기는 매 필지별로 자호 변동 사실을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구래의 羊字는 容字로 바뀌었는데, 천자문 순서상 용은 양의 81자 뒤에 있다. 구래의 谷字 필지는 若字 필지로 바뀌는데, 곡의 65자 뒤가 약이다. 구래의 翳字는 澄字로 변경되었는데, 습의 55자 뒤가 징이다. 19세기 전반부터 사용되던 자호가 1912년에 새로운 것으로 바뀌고, 신·구자호 간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사실 등은 결수연명부를 작성할 때 광무양안을 활용하였음을 보여준다. 결수연명부를 작성할 때 광무양안 이전에 작성된 양안을 활용했다면 진주 하씨와 영월 신씨가 사례에 보

34) 韓國學中央研究院 所藏(마이크로필름번호 35-006325-006329, 35-006479-006483)

35) 1868년 영월 신씨가 소유토지의 결부수는 근사치이다. 1868년 전답안 228필지 가운데 결부수가 확인되는 필지는 214필지, 17결89부8속이다. 이를 근거로 전답안이 훼손되어 결부수가 확인되지 않는 14 필지의 결부수를 1결17부1속으로 추정하였다. 1868년 신씨의 전답 규모 19결6부9속은 이러한 추정을 거친 결과물이다.

36) 장흥군 용산면 상금리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다.

듯이 두 장부에서 동일한 자호가 다수 확인되어야 한다. 이같이 지역에 따라서는 광무양안이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런데 진전과 '主'名에 대한 광무양전과 토지조사사업 주체들의 인식은 상당히 달랐다. 이미 보았듯이 광무양안은 양전 담당 주체에 따라 진전 파악에 대한 입장이 다소 달랐다. 하지만 진전에 대한 인식은 비슷했던 것으로 보인다.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이 조선의 모든 토지를 조사하는 데 있었던 만큼 일제는 진전파악에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일제는 먼저 결수연명부를 작성할 때 양안에 등재된 有主陳田을 모두 파악했다. 예컨대, 1911년에 작성된 영월 辛氏家 결수연명부에는 陳田 4필지(수전 3필, 한전 1필)가 등재되어 있다. 과세지권취도 단계에서는 결수연명부에 등재된 적이 없는 곳도 일부 파악했다. 창원지역 과세지권취도<sup>37)</sup>에는 결수연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곳을 '陳' 혹은 '林野'라는 명목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이곳에 자호와 지번이 없는 데 비해 '田' 혹은 '畓'으로 표기된 필지에는 예외 없이 자호 지번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陳' 혹은 '林野' 명목으로 파악된 곳이 결수연명부에 등재된 경험이 없음을 의미한다.

일제는 토지대장을 작성하면서 과세지권취도 단계에서 단순히 '陳' 혹은 '林野'라는 명목으로 파악한 곳에 구체적인 地目을 설정했다. '陳'으로 파악된 곳은 토지대장[지적도] 단계에서 전, 답, 河川, 溝 등 다양한 지목으로 바뀌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과세지권취도를 작성할 때 그곳을 田, 畓, 河川, 溝 등으로 파악하지 않고, '陳'으로 파악했을까? 토지조사사업 때 활용한 양안에서 그곳을 無主陳田으로 파악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지권취도는 결수연명부에 등재된 田과 畓, 그리고 양안에 등재된 적이 없는 河川, 溝 등과 구별하기 위해 그곳을 '陳'으로 파악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임야'로 파악된 곳은 토지대장[지적도] 단계에서도 대부분 '임야'로 남아있었다.

우리는 이같은 사실을 통해 '陳'에 대한 일제의 인식이 그 이전과 확연히 달랐음을 알 수 있다.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외형을 가지고 田, 畓, 河川, 溝, 林野 등으로 판단했다. 일제는 오직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현실만 인정했던 것이다. 즉 토지대장에서는 河川 밑에 있는 논밭이나, 아름답리 나무가 자라는 논밭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 과거는 단순히 과거로 남아있을 뿐이고 조선시대처럼 과거를 '現在化'할 수 있는 여지는 원천 봉쇄된다. 과거의 연장선상에 현재가 있는 것이

37) 창원지역 과세지권취도는 마산시청에 보관되어 있다.

아니고 과거와 현재는 단절적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인식의 단절적 변화는 양안과 토지대장의 ‘주’명에서도 확인된다. 그러한 사실은 일제시기 서천군 마산면 馬鳴里 사례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마명리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광무양안과 지적도, 토지대장이 모두 남아있고, 그것을 어렵지 않게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로 조선시기 下北面 馬鳴里, 馬池里, 月明里가 합쳐져 마명리가 되었다. 馬鳴里, 馬池里, 月明里 등은 한산군 광무양안<sup>38)</sup> 回字에서 密字에 걸치는 지역이다.

토지대장에 등재된 마명리 토지는 모두 404필지였다. 그리고 한산군 광무양안에 등재된 回字 1번에서 密字의 마지막 필지인 35-1번까지는 모두 372필지였다. 그런데 광무양안의 372필지 가운데 일부는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로 생겨난 마명리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비롯되었다. 먼저,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로 마을의 경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둘째 광무양안은 里別 혹은 坪別로 별도의 자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어떤 자호는 2개 리 토지를 포괄하기도 한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광무양안의 回字 첫 번째 필지에서 密字 마지막 필지까지, 즉 372필지 가운데 어떤 필지가 1914년 이후 마명리 토지로 편입되는지는 두 자료에 등재된 필지를 일일이 대조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대조결과 광무양안의 372필지 가운데 318필지만이 마명리 토지로 편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교대상은 마명리 토지대장에 등재된 404필지와 광무양안의 318필지이다. 대조 결과 토지대장의 404필지 가운데 25필지(畓 10필지 1011평, 田 8필지 927평, 墓 1필, 林野 5필, 池 1필)는 양안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묘, 임야, 池 등과 같은 지목(7필지)은 광무양전에서 조사대상이 아니었음을 감안하면 광무양전은 마명리 토지대장에 등재된 전답 397필지 가운데 379필지를 파악한 셈이다. 필지 기준으로 보면 광무양안의 전답 파악율은 95.5%이다. 면적단위로 보면 파악율은 더욱 높아진다. 마명리 토지대장에 등재된 전답 397필지는 235903평이고, 광무양안에서 확인되는 379필지는 233965평이다. 379필지의 면적은 397필지 면적의 99.2%에 해당한다. 광무양전의 토지파악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광무양안에서 확인되지 않는 필지는 개천 주변이나 산기슭에 위치한 소규모 필지였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

38) 奎 17672.

〈표 15〉 마명리 광무양안 시주명과 마명리 토지대장 지주명의 관계(단위: 필지)

住所 類型	馬鳴里	마산面 他里	한산郡 他面	충청도 타군	경성	기타 타도	합계
姓名 同	3			13		1	17
姓同名不A	7	2	18	17	7	2	27
姓同名不B	65	15	34	17	7	2	140
小計	72	17	52	17	7	2	167
姓名不同	97	35	51	2	33	3	221
合計	172	52	103	32	40	6	405

자료: 한산 광무양안, 한산군 토지대장.

이같이 광무양안의 318필지와 토지대장의 379필지가 같은 땅이다. 따라서 광무양안에 기재된 ‘主’명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토지의 ‘주’명을 비교하면 된다. ‘主’명의 실상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광무양안의 318필지와 토지대장의 379필지를 일대일로 조응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작업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광무양안의 1필지가 토지대장에서 몇 필지로 분할되기도 하고, 반대로 여러 필지가 1필지로 합필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자료의 개별 필지를 일대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필지를 405필지로 늘려야만 했다. 이렇듯 양안의 토지와 토지대장의 토지를 일대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분필과 합필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사실은 두 자료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애매한 부분도 간혹 있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실상을 살피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두 자료에 모두 등재된 필지의 인명을 살펴보기로 하자. 양안의 시주명은 132종이고, 토지대장의 인명은 128종이다.<sup>39)</sup> 이들 가운데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에서 동시에 확인되는 인명은 모두 13종에 지나지 않는다.<sup>40)</sup> 이렇듯 두 대장에 모두 확인되는 인명은 약 10% 정도다.

인명이 일치하는 비율은 필지 기준으로 보면 더욱 낮아진다(〈표 15〉 참조). 동

39) 광무양안의 시주 132명에는 官과 승 부육이 포함되고, 토지대장의 소유주 128명에는 봉루암, 동척, 국가도 포함된다.

40) 권성수, 김덕보, 김병국, 김성거, 김성수, 김익수, 노재룡, 신보경, 양덕현, 유재하, 이세재, 이운백, 승 부육(토지대장에 봉루암으로 기재)이다.

일 필지의 인명이 일치하는 사례는 405필지 가운데 겨우 17필지(전체의 4.2%)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두 자료의 인명이 일치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시기 사이에 개명이 이루어져 동일 필지의 인명이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에 달리 기재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양안의 惠자 2번과 토지대장의 51번지는 동일한 토지인데, 양안의 시주는 劉載夏이고, 토지대장의 소유주는 劉載重이다. 성이 동일하고, 이름 두 글자 가운데 한 글자가 동일한 경우[姓同名不A], 개명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례가 모두 27건 확인되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개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두 시기 사이에 상속이 이루어져 동일 필지의 인명이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에 달리 기재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양안의 漢자 5번과 토지대장의 48번지는 동일한 토지인데, 양안의 시주는 李載潤이고, 토지대장의 소유주는 李鍾翊이다. 이같이 성이 동일하고, 이름이 상이한 경우[姓同名不B]가 모두 140필지에서 확인되는데, 이 가운데 일부 필지는 상속으로 인해 이름이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매매로 인해 두 자료의 이름이 서로 상이한 필지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개명, 상속, 매매로 인해 약 10여 년의 간격을 두고 작성된 장부에서 같은 땅의 ‘主’名이 서로 일치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이유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동일 필지의 ‘主’名이 일치하는 비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광무양안 작성 당시의 소유주의 실명을 ‘主’名으로 기재하는 비율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광무양전 당시 땅 임자들은 ‘主’名을 등재할 때 자신의 實名 이외에 호명, 자신의 字, 심지어 타인의 이름 등을 사용했다고 여겨진다. 『量地衙門 施行條例』는 이러한 추정의 설득력을 한층 높여준다. 『量地衙門 施行條例』는 ‘主’名 파악과 관련하여, “전답 시주가 아침저녁으로 변동하며, 一家의 경우에도 異産, 즉 分戶別産의 경우가 많은데, 이를 치밀하게 조사하는 것은 물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가급적 민인들의 편의에 따르도록 한다”고 규정했다.<sup>41)</sup> 광무양안은 ‘主’명을 등재할 때 해당 토지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산림천택이나 다른 없는 진전을 양안에 등재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이 광무양안은 다양한 성격의 ‘主’名 사용을 용인한 문서였다. 국가도 이를

41) 『量地衙門 施行條例』의 내용은 다음 글에서 재인용. 왕현중, 2010 『광무 양전·지계사업의 성격』,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 해안,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편.

문제 삼지 않았고, 개인도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계아문양안을 토대로 관계를 발급하였고, 개인은 광무양안을 토대로 새로운 전답안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이같이 광무양안 또한 18·19세기 양안과 마찬가지로 오직 현재의 사실만 파악한 것이 아니라 과거 사실도 ‘現在化’시켜 활용했던 것이다. 이전 양안과 마찬가지로 광무양안에도 세월의 켜가 여러 층 쌓여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토지대장에서는 所有者名을 파악할 때 오직 생존자의 실명만 사용하도록 했다. 일제는 所有者名을 파악할 때도 과거 사실을 ‘現在化’시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시켰던 것이다. 이같이 일제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현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는 단절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식하도록 강요하였던 것이다.

## 5. 맺음말

이상에서 양안과 토지대장에 등재된 陳田과 ‘主’명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살펴 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양안과 광무양안에 등재된 진전과 ‘主’명의 성격은 큰 차이가 없었다. 양안에 등재된 진전 가운데는 그 외관이 여느 산림천택과 다름없는 곳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진전은 양안에 등재되고, 산림천택은 양안에 등재 되지 않았다. 이같이 진전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실제로 산림천택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곳을 논밭으로 인식했다. 조선시대에는 개간의 손길이 닿은 적이 있으면 논밭이고, 닿은 적이 없으면 산림이었다.

그런데 광무양전 때에는 양전 담당 주체에 따라 진전 파악에 대한 입장이 다소 달랐다. 양지아문은 예전에 경작된 적이 있는 곳이라도 주인 없이 버려진지가 오래되어 산림천택이나 다름없는 무주진전은 적극적으로 파악하려하지 않았다. 양지아문은 외형상 과거에 전답이었음이 분명한 곳만 진전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지계아문은 양전 당시에는 외양이 산림천택처럼 보이지만 예전에 전답으로 경작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곳은 적극적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진전에 대한 인식은 비슷했던 것으로 보인다. 눈앞에 천택이 펼쳐져 있더라도, 그곳에 개간의 손길이 닿은 적이 있었다면 그 지역을 농토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양안은 양전 당시에 경작되고 있던 起耕田뿐만 진전에 대해서도 ‘主’명을 파악하였다. 양안의 ‘主’명으로 실명뿐만 아니라 戶名, 字, 타인의 이름 등도 사용되었

다. 이러한 사실은 다양한 형태의 이름으로 ‘主’名을 기재하더라도 각종 권리행사에 큰 지장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일제시기 이전까지는 양안에 ‘主’名을 등재할 때 직·간접적으로 해당 토지와 인연을 맺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도 현실 생활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시기였던 것이다. 과거에 인연을 맺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산림천택이나 다름없는 진전을 양안에 등재한 사실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즉 18·19세기에는 양안을 작성할 때 오직 현재의 사실만 파악한 것이 아니라 과거 사실도 ‘現在化’시켜 활용했던 것이다.

한편 ‘陳’에 대한 일제의 인식은 그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외형을 가지고 田, 畓, 河川, 溝, 林野 등으로 판단했다. 일제는 오직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현실만 인정했던 것이다. 즉 토지대장에서는 河川 밑에 있는 논밭이나, 아름드리 나무가 자라는 논밭은 없었다. 그리고 토지대장에 所有者名을 등재할 때 오직 생존자의 실명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 글에서는 陳田과 ‘主’名을 통해 양안의 성격을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진전화의 원인과 ‘主’名の 성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해명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추후 연구에서 밝혀보고자 한다.

논문투고일(2010. 10. 26), 심사일(2010. 11. 26), 게재확정일(2010. 11. 30)

## 참고문헌

- 金容燮, 1970 『朝鮮後期農業史研究』, 一潮閣.  
 李榮薰, 1989 『朝鮮後期社會經濟史』, 한길사.  
 金鴻植 외, 1990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宮嶋博史, 1991 『朝鮮土地調査事業事の研究』, 東京大學校 東洋文化研究所.  
 김선경, 1993 「조선후기 山訟과 山林 所有權의 실태」, 『東方學志』, 77-79.  
 金容燮, 1993 「朝鮮後期 身分構成의 變動과 農地所有」, 『東方學志』, 82.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1995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宮嶋博史, 1996 「量案における主の性格」, 『論集朝鮮近現代史: 姜在彦先生古稀記』

念論文集』, 明石書店.

이영훈, 1997 「量案 上의 主 規定과 主名 記載方式의 推移」,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민음사.

김건태, 2000 「경자양전 시기 가경전과 진전 파악 실태」, 『역사와 현실』 36.

김경숙, 2002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鄭勝振, 2003 『韓國近世地域經濟史』, 景仁文化社.

李宇衍, 2005 「朝鮮時代-植民地期 山林所有制度和 林相變化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건태, 2009 「戶名을 통해 본 19세기 職役과 率下奴婢」, 『韓國史研究』 144.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2010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 혜안.

**Abstract**

## The Grasp on the Chinchôn and the Landholder through the Land Register and the Cadastral Survey

Kim, Kuentae

This article shed light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land register and the cadastre by analyzing the chinchôn (陳田, the fallow land not used for growing crops) and the name of the landholder registered in them.

In result, I fou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stinction regard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chinchôn and the name of the landholder between both land registers in Chosôn and in Kwangmu (1897-1907). Although the chinchôn had similar nature to forests and ponds in a substantial part, out of such land categories it was just the chinchôn that was registered in the land register. This connotes that the people in Chosôn dynasty recognized the chinchôn as the farmland in spite of forests and ponds in reality. What with the real name or what with the name of the household, the name of the landholder was recorded in the land register. It means there was no problem for someone to have the right of the related land even though a dead man became an entry as the name of the landholder. In the eighteenth through the nineteenth centuries, there was no significant problem whether or not which name in the land register was recorded.

Whereas, the recognition of the chinchôn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was so different from before. They just judged the land categories such as dry fields, paddies, stream, ditch, forest land with consideration on outward appearance in the cadastral survey. In other words, Japanese Empire just acknowledged the realities in those days when they conducted the cadastral survey. In addition, they stipulated that the people must register the real name of the living as the name of the landholder in the entry of the cadastre unlike the land register in Chosôn dynasty.

**Keywords:** land register, cadastre, chinchôn, name of the landholder, name of the householder, real name